

등록번호	안전관리처-164
등록일자	2016.01.11.
결재일자	2016.01.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대리	부장(업무대행)	안전계획팀장	안전관리처장	안전관리본부장
김민수	황경식	임채진	권환동	01/11 정수영
협조자	안전조사처장	김상길		

「긴급 안전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확립(안)

2016. 1.

「긴급 안전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확립(안)

지하철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16년도부터 새롭게 편성된 긴급 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예산 심의 기구인 안전관리 위원회의 운영 프로세스를 확립코자 함

I 관련근거

-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제21조(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제4항
- 사장방침 제374호('15.6.9.) “안전관련 주요업무 의사결정시스템 개선(안)”
- 기획전략처-7761호('15.12.24.) “2016년도 예산편성(안) 확정 통보”
- 안전조사처-190호('16.1.8.)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예산 집행 검토”

II 현황 및 필요성

- 안전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개선 운영 중 — 의결 기준 보완 필요
⇒ 기존 안전위원회에 안전예산 심의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15.6월부터 안전관리위원회로 개선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의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16년도 예산편성(안) 이사회 승인('15.12.23.) — 긴급 안전예산 편성
⇒ 긴급 안전예산으로 확보한 10억원(안전조사처 편성)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예산 사용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프로세스 확립 필요

※ [참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개요 — 사장방침 제374호('15.6.9.)

- 명 칭 :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위원회(약칭 안전관리위원회)
- 개 최 : 정기회의 - 연 1회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0~15인으로 구성
 - 위 원 : 본부장 및 부서장(위원장 : 안전관리본부장)
 - ▶ 당연직 위원(11명) : 본부장(5명), 본부별 총괄 부서장(5명), 안전조사처장
 - ▶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조정 및 확대 운영
- 기 능
 -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및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의결
 - 주요 안전정책 방침 수립 및 부서 간 협업체계가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 안전예산 심의, 주요 사업의 역할과 권한 지정 등
 - 안정정책조정협의회 및 안전부서장 간담회 운영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기타 안전에 관한 사장의 요구사항 처리 등

III

개선방안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

개최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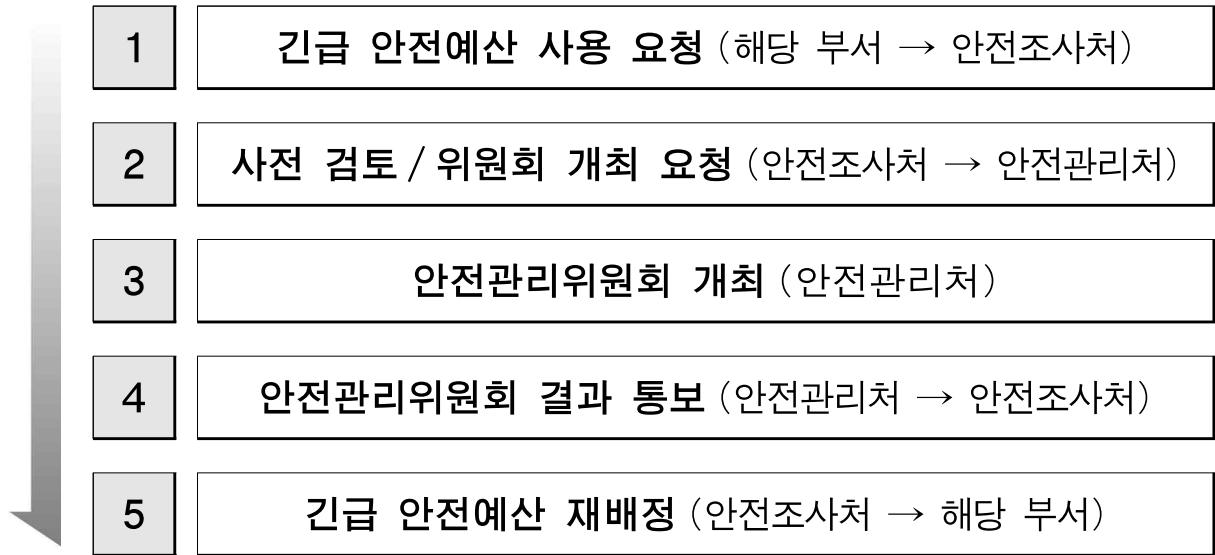
- 정기회의 : 반기 1회
 - ※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제21조 제4항에 의거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
- 임시회의 : 긴급 안전예산 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 시
 - ※ 안전관리위원회(임시회의)에 긴급 안전예산 심의 기능 포함

긴급 안전예산 사용 기준

사고·장애 재발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나 사고·장애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조사처-190호('16.1.8.)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관리예산 집행 검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안전관리위원회(임시회의) 운영 프로세스



안전관리위원회 의결 기준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위원 구성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

IV 기타사항

- 긴급 안전예산 사용 요청 시 안전조사처는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반드시 기획전략처(예산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처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요청
-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예규”를 준용하고,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조정 운영. 끝.